#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1년 3월 3일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이병도 의원 외 23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3. 상정일자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년 3월 3일 상정,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도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여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보호체계 운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학생 및 교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6조).
-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O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이병도 의원 외 2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74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보호체계 운용으로 범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구성비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표-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단위: 건, %)

연도	강간	강제 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 <del>용촬</del> 영	성적목적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Я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7.1]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5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48.8]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3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32,029

-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수준이었으나, 2015년 24.9%로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18.4%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은 5배 이상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아울러 작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편집한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공유되는 등 갈수록 성범죄 수법도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는 2020년 5월 19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1)

<sup>1) 「</su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sup>1.</sup>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sup>2.</sup>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교육청도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표-2]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구분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 및 위험, 피해 예방 방법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개념 이해, 사례 살펴보기 및 피해 상황 예방·대처 방법				
교육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초 5~6학년 및 중 1~3학년				
교육기간	'20. 6월~12월, 학급당 1시간	'20. 5월~12월, 학급당 2시간				

# [표-3]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실시 현황

(단위 : 교, 학급)

2	<u></u>	26	5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25	170	37	323	62	493		

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sup>3. &</sup>lt;u>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u>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sup>4. &</sup>lt;u>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u>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sup>5.</sup>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표-4]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전반적으로 교육이 만족스럽다.	54.7	29.1	13.1	1.7	1.4
2	강사가 전문적으로 잘 설명했다.		23.6	10.4	1.4	1.2
3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64.9	25.2	7.6	1.1	1.2
4	디지털성범죄가 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51.6	25.9	16.9	2.8	2.8
(5)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과 지원기관을 알게 되었다.	54.8	27.7	13.6	2.2	1.7
	평균	57.86	26.30	12.32	1.84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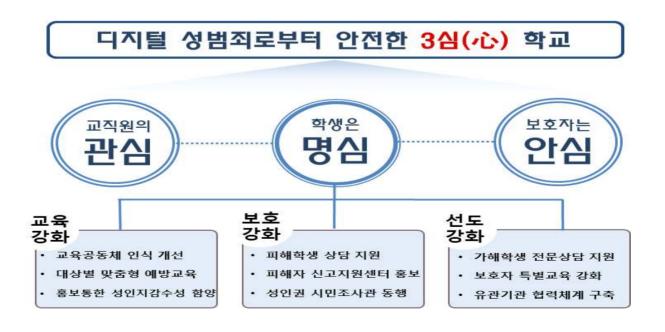
O 이러한 면에서 동 제정조례안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본칙 규정으로 계획 수립(안 제4조), 예방 및 대응 교육 (안 제5조),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안 제6조), 피해자 지원센터(안 제7조). 위탁(안 제8조), 자문위원회(안 제9조), 협력체계구축(안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1조)를 규정하는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4월 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 ② 피해학생 보호 및 상담 지원 ③ 가해학생 선도 조치 및 회복교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민주시민생활교육과-9414, 2020.4.29.).
- 따라서 안 제4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 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그림]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



- 3)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O 안 제10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sup>2)</sup>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온 서울 세이프)' 사업<sup>3)</sup> 및 주요 신고센터별 지원 유형 등을 홍보·안내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신고센터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유형

구분	신고번호	상담시간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연계)	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보호 시설( 연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11/2-77/5-7711		0	0	연계	연계	연계	연계
<b>디지털 성범죄</b> <b>피해자지원센터</b> 4) 온라인: www.wom	02-735-8994	평일 09:00~18:00 (온라인 24시간)	0	0	0	연계	연계	연계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실	010-3232-1318 010-8232-131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	0	연계	0	0	0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	-	-	0	0	0
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00~17:00	0	0	-	0	0	0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평일 13:00~17:00	0	0	0	0	-	-
해바라기센터 (아동형)	연세의료원 02-3274-1375		0	-	-	0	0	연계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서울대병원 02-3672-0365		0	0	-	0	0	연계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중부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056	365일, 24시간	0	0	-	0	0	연계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북부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상담가능	0	0	-	0	0	연계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동부	국립경찰병원 02-3400-1700		0	0	-	0	-	연계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남부	보라매병원 02-870-1700		0	0	-	0	-	연계

<sup>2)</sup> 업무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sup>3) (</sup>찾아가는 면접상담)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힘들 때 지지동반자가 직접 찾아 가 심리적 지지와 상담 지원

<sup>(</sup>진술 동행) 불법 촬영 피해자임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동행 (증거수집 방법 안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을 알았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진술 시 제출할 증거,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

<sup>(</sup>지원 방향 찾기) 피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한지 지원 방향을 함께 점검

<sup>(</sup>기관 연계) 의료·심리상담 기관 연결, 삭제 지원기관 연계 안내

- 따라서 안 제10조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 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 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없음.
-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sup>4)</sup>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을 비롯한 피해자 상담 지원부터 삭제 지원(방송통신위원회 연계), 수사·법률·의료지원, 보호시설 제공 등원스톱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 과정을 무료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3.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촬영, 동의·비동의적 촬영물 등을 사이버공간 등에 배포하거나 유포·협박 등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시 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
  -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교원 교육 사항
-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
  -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 제6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보호 교원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지원 사업
  -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사업
  -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 4.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 4.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